

부모의 수감 이후 홀로 생활하는 청소년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배영미* · 이지선** · 허은영***

I 알기 쉬운 개요

본 연구는 부모의 수감 이후 미성년 자녀들끼리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과 생활 경험을 깊이 탐구하고자 질적 사례연구로 수행되었습니다. 부모의 수감 이후 자녀들끼리 생활하는 10가구에 속한 총 17명의 청소년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부모 수감으로 인한 충격 속에서 '굶기'가 일상화되고, 임대료 납부에 대한 압박과 함께 가사 노동 및 동생 돌봄 책임을 홀로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며 심리적 고립감과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며, 교도소 방문과 같은 부모와의 접촉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도, 이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및 정책적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재한 상태였으며, '부모의 부재로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 수감 후 홀로 남겨진 수용자 자녀들이 처한 특수한 위기상황을 민감하게 이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행정 뿐 아니라 아동복지 차원에서 범부처간 상호협력하는 정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ezsun@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투 고 일 / 2024. 9. 9.

심 사 일 / 2024. 11. 4.

심사완료일 / 2024. 11. 13.

I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수감 이후 미성년 자녀들끼리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과 생활 경험을 탐색하여 수용자 자녀 당사자 관점에서 실천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부모의 수감 이후 아동단독세대로 생활하는 1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대일 또는 집단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사례별, 사례간 분석을 실시하여 각 사례의 특수성과 공통된 주제를 도출하고, 수용자 자녀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의 본질에 접근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수감 이후 미성년 자녀들끼리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다차원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홀로 떠맡아야 하는 책임감의 부담', '경제적 압박', '신체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교도소 면회 과정에서의 어려움', '제도적 지원의 부재와 불충분'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들의 경험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부모의 부재로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경험'으로 요약되었다. 이는 부모의 역할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지원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 속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수용자 자녀 당사자들의 아동 권리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 실천방안으로 부모 수감 이후 아동 단독세대가 처한 위기를 조기에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 수용자 자녀의 기본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아동 권리관점에서 제도적 지원과 법적 보호 장치 강화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아동 단독세대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하며, 향후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정책 및 실천 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수용자 자녀, 부모 수감, 아동단독세대

I. 서 론

2017년 실시한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는 연간 54,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가 수용된 직후에 갑작스러운 부모의 부재로 인한 충격 속에서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기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신연희 외, 2017).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수용자 자녀는 사회적 개입과 보호가 필요한 ‘위기에 처한 아동’이 아닌 ‘범죄 가해자의 가족’으로 낙인과 배제를 받아 왔고(신연희, 2019),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지더라도 주로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개입이었다고 볼 수 있다(박선영, 2013).

2011년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하면서 부모의 체포부터 수사, 재판 및 선고, 수감, 출소 및 가족사회 재통합까지의 모든 형사사법단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부모 수감 후 남겨진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2019년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로 한국정부에 대하여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 및 접견권 등의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과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United Nations, 2019). 이에 2020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는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권고’를 발표하며 체포 및 구속·구인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보호와 아동보호체계 연계, 수용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양육 및 접견, 부모관계 회복 지원,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 개선을 통하여 수용자 자녀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다(법무부, 2020). 이에 법무부는 2021년 수용자 자녀 현황 전수조사 실시를 비롯하여 관계부처,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수용자 자녀지원 민간단체 등이 연계한 ‘수용자 자녀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용자 자녀 지원정책 발굴 및 협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법무부, 2021). 법무부의 이같은 수용자 자녀 보호 조치 및 지원에 대한 개선 노력은 우리사회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뿐 아니라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방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수용자 자녀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수용자 자녀들을 위한 멘토링(강경래, 2013), 음악치료(하우봉, 2019) 연구, 수용된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권수진, 신연희, 2019)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으며, 위기상황에 있는 수용자 자녀를 위한 지원방안과 전달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신연희, 2013),

경찰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모 체포 및 체포 후 자녀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박선영, 2013) 등 수용자 자녀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용자 자녀의 경험을 아동권리 차원에서 조명하는 연구(신연희 외, 2017; 최경옥, 이경림, 2018; 최경옥, 이경림, 2019)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수용자 자녀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 탐색에 관한 연구(이지선, 최려나, 한기명, 2022a)와 수용자 자녀의 부모 접견 경험에 대한 연구(이지선, 최려나, 한기명, 2022b)가 수행되는 등 수용자 자녀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를 기반으로 수용자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 수용자 자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주무부처의 필요성, 인식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2010년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주소득자가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수용자 자녀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2012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의 자녀가 포함되어 동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부양의무자가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었다. 또한 2019년에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통해 피의자 체포 시, 가족과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의 개정으로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부모와의 접견(41조)과 신규 수용자 자녀의 보호와 정보제공(53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수용자 자녀 당사자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수용자 자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로 나타났으며(이지선 외, 2022a), 부모 접견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청 절차의 복잡함으로 부모 접견조차 어려웠다는 문제가 드러났다(이지선 외, 2022b). 이러한 점에서 발달권 및 생존권과 같은 아동권리 측면의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수용자 자녀의 생존권은 부모의 수감 초기,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수감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동의 발달권까지 전반적으로 침해되고 있다(신연희, 2019). 수용자 자녀는 부모 수감 이전부터 한부모가정이거나 친인척과 같은 비공식적 자원체계가 부재할 가능성이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기혼 수용자의 약 49.4%가 이혼상태이거나 법적으로 이혼을 했다고 조사되었다(신연희, 2015). 부모의 수감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양육환경이자 양육자의 보호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 생애사건이 될 수 있으며, 부모 수용 후 홀로 남은 자녀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모의 수감 이후 홀로 생활하는 수용자 자녀들에 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더 나아가 형집행법 53조 개정을 통해 신규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조치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수용자 자녀 보호조치가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부모의 수감 이후 홀로 생활하는 미성년 자녀들의 경험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부모의 수용 이후 수용자 자녀가 겪는 어려움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교정시설 수감과 동시에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10년 전부터 수용자 자녀지원의 불모지와 같았던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옹호활동과 연구가 시작되었고,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수용자 자녀 연구 중 신연희(2016)의 연구결과, 수용자 자녀 10가구 중 3가구 정도가 극빈한 상태에서 생활하며, 스스로 가난하다는 응답은 54.9%를 차지하여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이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부모의 수용 초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신연희, 2019). 그 이유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지만, 주로 갑작스러운 생계부양자의 부재와 재판 비용을 포함한 여러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경옥(2017)의 연구에서도 수용자 자녀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고, 국가로부터의 공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낮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의욕이 없고 대화를 피하거나 공부에 관심 없고 성적이 낮은” 문제 등이 드러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부모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자녀 발달의 전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강경래(2023)의 연구결과, 부모의 교정시설 수용은 “보호자인 부모와 아동을 강제적으로 분리하여 자녀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심리적 충격과 양육환경의 질적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선영과 신연희(2012)는 부모의 구금을 경험한 자녀들은 소위 “부모의 관리/감독의 부재와 부모와의 분리를 통한 분노와 좌절감 등의 요인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라는 발달적 특성에 더하여 부모 수용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이 더해지면서 부정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지선 외(2022a)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 자녀들은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역할 변화, 갑작스러운 양육환경 변화, 주변인들의 태도 변화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구체적인 예로, 부모의 수감 이후 양육자의 부재 내지 변화(조부모 양육)를 겪거나 생계부양자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모를 대신하여 형제자매가 동생 돌봄까지 떠안게 되는 등 돌봄자 역할까지 수행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이지선 외(2022b)의 연구에서는 수용자 자녀들이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강제적 분리와 제한된 접견 경험이 수용자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함을 언급하며, 수용자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와의 접견 신청 과정, 부모를 만나는 물리적 환경, 접견 횟수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2. 부모 수용 이후 홀로 생활하는 수용자 자녀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 자녀가 겪는 어려움 중에서도 “보호자 부재” 문제는 성장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양육과 보호, 즉 기본권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방증한다. 이와 관련하여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보호자의 부재라는 양육환경이 아동 발달에 미칠 위험성을 고려하여, 1996년에 소년소녀가정제도¹⁾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아동복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2000년도부터 소년소녀가정을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를 통해 보호조치하고 있다. 또한 예외적인(내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지정을 금지²⁾하고 있으며, 특히 15세 미만의 아동단독세대는 소년소녀가정 지정이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이래 만 명을 상회하던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2000년대 만 명 아래(9,579명)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2년 754명, 2021년 3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21).

이와 대조적으로 2021년 법무부의 ‘미성년 수용자 자녀 현황 전수조사’ 결과, 위탁가정 보호를 받지 못한 수용자 자녀들이 아동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수조사로 수행된 이 조사에서 응답을 거부한 약 23%를 제외하고, 응답한 수용자 37,751명 중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가 7,848명이고, 그 중 2.4%는 미성년자녀가 위탁시설에서 생

- 1)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아동단독세대의 아동은 ‘소년소녀가정’으로 정의되며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세대로서 보호 체계의 부재하거나 취약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음. 만 18세 미만의 아동단독세대이거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포함됨(보건복지부, 2024). 이들은 소년소녀가장, 가족돌봄아동, 영케어러(young carer)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지칭됨
- 2) 15세 이상의 형제나 자매가 함께 살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지속해왔거나, 주변에 친인척이 거주하여 자양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예외적으로 지정될 수 있음(보건복지부, 2024).

활하고 있으며, 0.6%는 아동만 생활하고 있고, 2.1%는 모른다는 기타로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 미성년 수용자 자녀는 12,167명이었고, 그 중 80명이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명의 수용자 가정은 수용 전에 이미 국민기초보장법의 수급가구였던 것으로 파악되어(법무부 2021), 보호자 없이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자녀가 처한 현실을 짐작케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녀의 양육상황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용자가 76명에 달하여, 자녀들의 생활에 대한 정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정위탁 국내 입양현황(2010-2021년)에 따르면, 부모 복역으로 인한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지난 2010년 22가구에서 2021년 0가구로 보고되었으나(통계청, 2022), 2021년 법무부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의 수감 후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하는 가정의 경우, 부모의 수감사유로 인한 가정위탁 사례에 대한 통계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조사 시기, 주체, 방법(국가인권위원회, 무기명)에 따라 조사 결과에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아동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급선무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부재’ 속에서 수용자 자녀가 홀로 생활하고 있다면, 이들은 스스로를 돌보며 생활해야 하는 다중적 위기에 처하게 되며, 법무부의 교정행정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부모 수용 이후 공식적·비공식적 보호체계 없이 홀로 생활하는 자녀들에게는 심리·정서·교육·생활 관련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발달상의 위기가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수용 이후 아동단독세대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처한 어려움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책 및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질적사례연구

본 연구는 부모의 수감 이후 홀로 생활하는 미성년 자녀가 겪는 어려움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특정한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며, 사회현상 중에 비교적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분야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찰력을 얻는 데에 주로 사용된다(Cresswell, 2013). 부모의 수감 후 홀로 살아가는 미성년 자녀가 겪는 어려움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으로 각기 다른 가정과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질적사례연구 방법이 이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맥락을 풍부하게 탐구하는 데 매우 타당하다(Stake, 2000). 사례 내 분석을 통해 각 사례가 경험한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도전과 그들이 처한 구체적인 환경을 분석하여, 양적 연구에서 얻을 수 없는 세부적이고 다층적인 통찰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사례 간 분석을 통하여 여러 사례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이들이 직면한 구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1)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2)부나 모, 혹은 부모 모두가 수감된 경우, 3)세대 구성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단독세대이며, 4)1:1 면담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5)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이다. 참여자 모집은 법무부와 수용자 자녀 지원기관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법무부(2021)의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미성년 자녀 현황 결과에서 드러난 자녀끼리 생활하고 있는 80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보호자와 자녀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17가정이 모집되었다. 주말에 조모나 큰아버지 집에서 생활하는 등을 제외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10가정을 최종 선정하였다(Yin, 2015). 주된 인터뷰 응답자는 가구 내 가장 연장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16명)이었으며, 대학생(1학년)이 1명이었다. 가구 내에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연령은 최저 10세부터 최고 18세 사이에 고르게 나타났다. 전체 10가정 중 9가정이 부나 모의 수감 이전에 이미 한부모가정(한어머니 5, 한아버지 4)이었으며, 양부모가정이 1가정이었고 이 사례는 부모가

모두 수감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충청도, 대전시, 전라도, 경상도, 부산시, 강원도로 분포되었다. 주거실태를 보면 전세인 1가정을 제외하고 지역 및 주거형태와 무관하게 대부분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에 속함을 알 수 있으며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모의 수감 인지 관련하여, 부모로부터 직접 수감 사실을 듣게 된 경우는 3명이었으며, 대부분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거나, 실종신고로 알게 되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수용부모 및 가족 특성	수감인지	홀로 생활한 기간	주거 형태 및 주거비 실태
1	이혼-한어머니(수감) (여, 17세)	체포 목격	5개월째	• 빌라 지하 원룸 • 보증금 100만원, 월세 32만원
2	이혼-한아버지(수감) (여, 17세)	부를 통해	2개월째	• 빌라 3층 • 보증금 300만원, 월세 48만원
3	한어머니(수감) (남16세, 여12세)	외조모를 통해	7개월째	• 다가구 주택에 2층 • 월세(공과금 포함) 50만원
4	아버지, 어머니 (수감) (남, 18세)	서신을 통해	3개월째	• APT • 월세 60만원
5	이혼-한어머니(수감) (여18세, 남17세, 남10세)	모를 통해	5개월째	• APT,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 관리비 15~20만원
6	이혼-한아버지(수감) (여16세, 남12세)	부를 통해	22개월째	• APT • 월세 52만, 관리비 15~20만원
7	한아버지(수감) (여16세, 남14세)	신고접수후	13개월째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170만원 • 월세 28,000원
8	이혼-한어머니(수감) (여17세, 남15세, 여13세)	실종신고 후	20개월째	• APT • 전세
9	이혼-한아버지(수감) (여, 17세)	1년 뒤 언니를 통해	29개월째	• 임대아파트
10	혼외-한어머니(수감) (여, 15세)	3일 후 지인을 통해	12개월째	• APT • 월세 45만원, 관리비 10만원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 경험과 그 맥락을 깊이 탐구하고자 1:1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만, 가구 내에 다른 미성년 형제·자매가 있고, 이들도 인터뷰 참여에 동의한 경우 집단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의 목적, 인터뷰 진행 방식,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인터뷰 녹음 등에 관하여 안내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인터뷰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파악하였다. 2021년 6월 한달 동안 본 연구의 책임연구자 1인과 수용자 자녀지원기관의 직원 1인이 사례로 선정된 연구참여자의 집이나 집 근처로 방문하여 대면 면접을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자료 수집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자 1인이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인터뷰는 각 1회씩 수행하였으며, 시간은 회당 5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가 가능한 일정을 고려하여(평일 하교 후, 주말) 연구참여자들의 집에서 수행되었다. 예외적인 사례로, 막내 동생의 부모 수감 미인지로 인해 거주지 인근 스터디카페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작 전 연구참여에 관한 고지된 동의 및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설명 후에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보호자 없이(혹은 형제자매와) 생활하는 수용자 자녀의 부모의 수감 이후 경험한 변화와 어려움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questionnaire) 질문지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부모 수감 이후 미성년 수용자 자녀가 처한 위기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참여자의 감정적 상태나 상황에 맞춰 질문을 조정하는 유연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는 질적연구를 오랜 기간 수행해왔으며 특히 수용자 자녀 관련 연구 및 사례관리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다년간 수행했다. 면담 진행 중에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질문으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면담 시작 이전에 연구참여자와 라포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인터뷰 중단에 관한 피해가 전혀 없음을 고지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사전 동의하에 디지털 녹음되었으며, 녹음파일은 인터뷰 직후 전문 속기사에 의해 전사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인터뷰 전사본 뿐만 아니라, 아동의 일상 생활 맥락에서 이들의 경험을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용자 자녀지원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가정방문보고서, 수용자 자녀 지원기관의 인테이크 기록 문서, 연구자의 직접 관찰에 의한 관찰기록과 연구일지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례 내 분석(Intra-case Analysis)과 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우선 사례 내 분석을 통해 개별 사례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사례의 고유한 경험, 내재된 구체적인 맥락과 변수들을 구분하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탐구하였다(Yin, 2014). 부모의 수감 이후에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경험한 변화와 가족 내 지원과 생태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공식적 지원과 비공식적 지원의 현황, 심리 사회적 어려움과 지원 욕구 등의 내용을 따라서 경험된 사건과 의미를 파악하고 각 사례별 경험을 의미단위로 구성하였다. 이후 사례의 경험을 시간 흐름에 따라 기술하였다. 이후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사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각 사례에서 도출된 개념이나 패턴을 종합하여, 전체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적 이슈와 어려움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Stake, 2006). 다양한 사례의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준에 따라서 범주화(categorizing)하고 핵심의미의 주제(theme)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자료를 읽으며 Miles와 Huberman(1994)의 자료분석 절차에 따라 취합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단순화, 요약하는 감환(reduction)의 과정을 거친 후, 2단계로 수집된 자료를 배열하고 각 의미를 조직적으로 응축하여 연구자간 응축 결과로 나타난 주요 개념에 따라 부모의 수용 이후 변화와 경험된 어려움, 부모의 수감 인지와 면회 경험, 부모의 수감 이후 아동에게 지원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의 현황, 경험된 어려움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공통적인 내용의 범주를 중심으로 개념을 서로 연결하고 묶는 과정을 반복하며 결과를 도출하였다. 인터뷰를 수행한 연구자 외에 1인의 연구자가 분석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자는 각자의 장소에서 분석을 실시하고, 이후 연구진 간 확인을 통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자 간 이견을 최소화하고자 최종 결과 합의에 이를 때까지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삼각측정(triangulation)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자료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Patton, 1999). 자료수집 과정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수집된 심층 면담뿐만 아니라 관찰, 문서, 연구일지 등의 자료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다차원적인 맥락을 포착하고, 이를 통해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 간 검토를 통해 도달한 합의된 연구결과에 대해 수용자 자녀지원기관 전문가들에게 발표를 통해 내용타당도에 대한 검토를 받은 후 최종 연구결과를 기술하였다.

IV. 연구결과

1. 사례 내 분석 결과:부모 수감 후 홀로 남은 자녀 이야기³⁾

1) 사례1: 수감비에서 어머니 영치금과 집세를 내고 나면 버스비도 빠듯한 수연이

수연이(여, 17세)가 9세 되던 해, 부모님은 이혼했다. 이후 멀고 먼 시골로 이사와 전학을 했고, 컨테이너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동생이 태어났다. 중학교 입학 후 경기도로 이사하여 어머니 지인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수연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씻고 나오는데, 누군가 갑자기 찾아와서 어머니께 수감을 채우고 끌고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어머니 수감 이후에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지속되는 욕설과 폭력을 견디기 어려워 집을 나온 수연이는 가출청소년쉼터에서 머물다가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학교 통학거리는 멀어졌지만 가진 돈에 맞춰 그나마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었고, 2021년 1월부터 빌라 반지하(원룸, 보증금 100만원, 월세 32만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부모 없이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서러움이 반복쳐 올라오는 날이 많다.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주시지만 지인의 집을 떠난 후 집 주소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고, 수연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 등기로 오는 우편은 받기도 어렵다. 기초수급으로 받는 돈에서 어머니 영치금 20만을 보내드리고, 집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여, 버스비조차 빠듯하다.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 돈도 받지 못했다. 고3이라 취업 준비로 마음이 분주하지만 취업 전 트라우마 상담을 먼저 받고 싶다. 지인의 집에 머무는 동생이 걱정된다.

2) 사례2: 급식이라도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는 지안이

지안이(여, 17세)의 아버지는 이혼-재혼-이혼을 반복하였고, 친인척과의 관계는 모두 단절되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아버지는 서울에서, 지안은 충청도에서 각자 생활을 했고, 코로나 이후 부와 잠시 함께 지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재판에 관한 일을 언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감되었다. 아버지의 수감 이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 생각도 없어졌다.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 직업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지안은 2021년 4월부터 2개월째 다시 혼자 생활하고 있다(빌라 3층, 보증금 300만원, 월세 48만원). 아버지가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셔서

3) 사례를 기술하기 위해 각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가명을 사용하였음

서 신청했다. 식사준비는 너무 귀찮아서 집에 밥통은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올 수 있는 날은 석식까지 먹을 수 있고(월~목), 주말에는 도시락이 배달된다. 긴급복지지원법으로 47만의 지원을 받았고, 이전에 받은 장학금이 있었지만 월세를 내고 나니 당장 쓸 수 있는 여윌돈이 하나도 없다. 10만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시험기간에 집안 일까지 해야 하는 데 따른 부담이 너무 크다. JLPT 시험도 보고, 유학의 꿈도 꾸고 있지만 ‘어차피 가망이 없는’ 현실에 답답하다.

3) 사례3: 동생돌봄의 부담과 찾아오는 채권자들때문에 한숨 짓는 대진이

대진이(남, 16세)의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고,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별거하셨다. 중학교 2학년 때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이사와 전학을 하게 되었다. 외삼촌마저 관계가 끊어지고 외할머니 외에는 연락하고 지내는 분이 거의 없다. 어머니 수감 이후 대진은 2020년 12월부터 동생과 둘이서 생활하고 있으며(다가구 2층, 월세 50만원), 강원도에 살고 계시는 외할머니께서 반찬을 만들어다 주시고, 건물주인에게 누구도 집에 들이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를하셨다. 학교 선생님께서 어머니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으셨을 때, 대진은 평평 울면서 어머니 수감 사실을 말씀드렸다. 이후 선생님께서 장학금, 긴급지원, 기초수급에 대해 알려주시고 지원해주셨다. 지원금을 받게 되어 미납되었던 어머니 휴대전화 요금부터 체납되어 있던 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있었다. 외할머니의 당부대로 가능하면 매일 어머니께 편지를 쓰고, 가계부를 작성하려고 노력하지만, 동생이 용돈을 더 달라고 할 때마다 난감하다. 아무리 아껴 쓰려고 해도 수급비에서 월세와 관리비로 나가는 돈이 60만원이다보니 20만원으로 생활하기는 너무 힘들다. 대진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봐 주거나 성적이 올라도 칭찬해 줄 어머니가 없는 상황이 힘들다. 어머니 채무 문제로 찾아오는 분도 계시고,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어 한숨만 나온다. 빨리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취업하고 대학도 진학하고 싶다.

4) 사례4: 부모의 수감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승주

부모님께서 지방에 가시면 며칠씩 안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기에, 승주(남, 18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혼자 지내는 날이 많았다. 아버지께서 먼저 수감되고(당시 고1), 어머니는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숨겼지만 승주는 서신의 발신처가 교도소인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리고 6개월 지나 어머니까지(당시 고2) 수감되었다. 2021년 3월에 이모의 도움을 받아 이사를 한 이후로 혼자 생활하고 있다. 이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승주의 월세(60만원)와 생활비(20만원)를 내주는 데 대한 미안함을 크게 느끼고 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전교 회장이

되었다. 누구에게도 부모님 수감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승주는 담임선생님께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전화를 절대 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다. 부모님의 수감 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화도 나고, 슬픔, 불안도 커졌다. 집안 일, 식사준비도 힘들었고, 체력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친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지만 하루 한 끼 차려 먹기도 힘들다. 직접 면회를 가기에는 거리가 멀어 가지 못하고, 서신만 주고 받는다.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진로를 변경하여 간호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

5) 사례5: 어머니 수감을 모르는 막내를 보살피며, 아르바이트로 생활이 빠듯한 은신이

은신이(여, 18세)의 부모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혼하셨다. 어머니께서 수감되신 후 2021년 1월부터 동생들(17세, 9세)과 생활하고 있다(APT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관리비 20만원). 어머니 수감 이후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달라졌다. 은신이가 대학에 입학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00만원을 벌고 있지만,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생활하기에는 너무 빠듯하다. 은신이는 혼자 어머니 면회를 두 차례 다녀왔다. 둘째는 어머니 수감에 대해 알고 있지만, 막내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어머니 수감 이후 동생의 학교 앞으로 찾아와 위협하는 사람들, 주차장에 와서 벨을 누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를 고소한 내용의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되고 있다. 은신이는 엄마가 빨리 나와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지만 출소 후에도 채무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대한 걱정이 크다.

6) 사례6: 아버지 수감 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선이

선이(여, 16세)의 부모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혼하셨다. 고모님이 두 분 계시지만 연락이 끊겼다.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수급비를 관리하며 후견인이 되었지만 수급비를 마음대로 사용했고 결국 후견인이 바뀌었다. 현재 아파트에서 동생(초5, 12세)과 둘이 생활하고 있다. 기초수급으로 120만원을 받아서 월세 52만원, 관리비(15~20만원), 학원비(56만원)를 내고 나면 쓸 돈이 없다. 아버지께서 수감되신 직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었고, 집안일은 너무 힘들었다.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아 배고픈 느낌이 익숙해지고 있다. 복지센터에서 반찬 지원을 받아도 음식쓰레기 처리가 힘들어서 국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다. 급식카드도 삼각김밥을 사 먹기도 한다. 밥을 굶더라도 학원을 유지할 만큼 공부에 욕심을 내고 있지만 후견인과 교사로부터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며 특성화고 진학을 권유받았다. 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어려워지고, 스마트접전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아버지께 편지를 쓰고 있다.

7) 사례7: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수용자 자녀라는 낙인으로 힘든 화진이

화진이(여, 16세)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화진의 아버지는 친구의 성추행 신고로 구속되었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남동생(15세)과 둘이 낡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보증금 170만원, 월세 28,000원). 수급비 87만원이 나오면 고모님께서 월세, 아버지 보험료(8만원) 등을 납부하고, 화진이 남매 용돈을 주신다. 화진이가 밥은 할 수 있지만 반찬과 빨래는 고모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집안을 들여다보면 당장이라도 천장이 내려앉을 듯 낡아서 비라도 내리면 무너질 듯한 상태이고, 선풍기도 없이 여름을 지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수업을 하고 있지만 화진이 남매에게는 비대면수업을 수강할 기기가 없었기에, 고모가 학교에 가서 고장난 컴퓨터라도 달라고 요구한 끝에 노트북을 한 대 받아 왔다. 화진이는 교통비가 없어 학교까지 30분 소요되는 거리를 도보로 통학하고 있다. 고모는 화진이의 친구가 아버지를 성추행으로 신고한 데 대해 욕을 하면서 비난하였고, 화진이는 아버지가 출소하면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며 울먹였다.

8) 사례8: 어떤 지원도 없이 동생들 생활관리와 진로 고민을 하는 고3 해인이

해인이(여, 17세)의 부모님이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수감되었다. 주차장에서 전화가 왔다고 내려가셨는데 이후 어머니께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 친구분으로부터 실종신고를 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타 지역 경찰서에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2020년 10월부터 동생들(고1 남, 중3 여)과 셋이서 생활하고 있다. 학교에서 옆드려 있는 등 갑작스레 달라진 해인을 걱정하던 담임교사가 “힘든 일 있어?” 라고 물었고, 어머니 수감사실을 말씀드렸다. 당장 어떤 지원이라도 받고 싶어서 학교에 도움을 구했지만 실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첫째인 해인이는 동생들 돌봄도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늘 어머니께서 집안일과 식사준비를 도맡으셨는데, 식사시간이 되어도 밥 먹으라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누가 식사를 준비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둘째는 게임에 몰입하고, 생활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성적이 저하되고, 최근 시력이 나빠져 판서를 읽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셋째는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삼촌이 공과금을 포함하여 용돈관리를 해주지만, 삼촌께 미안한 마음에 다른 부탁을 하지 않는다.

9) 사례9: 지난 1년 간 아버지 수감사실을 모르고 홀로 지낸 예선이

예선이(여, 17세)의 부모님은 초등학교 5학년때 이혼하셨고, 아버지가 구속된 2019년 1월

부터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나이 차이가 많은 언니(29세)는 대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1년간 아버지의 구속에 대해 알리지 않고, 외국에 나가 계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의심스러워진 예선이는 아버지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언니가 수감 사실을 알려주었다. 미술을 전공하려는 예선이는 미술학원을 다니기 위해 기숙사생활을 접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원비가 부담되어(월 50~60만원) 학원을 그만 두었다가 원장의 배려로 다시 나가고 있고, 미술용품 구입 비용 등에 대한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식사준비까지 해야 할 일은 많고, 통학시간만 1시간 반이 걸려 늘 시간이 부족하다. 아버지 면회는 한번 다녀왔지만 무척 낯설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다.

10) 사례10: 어머니 수감 후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 온 진주

진주(여, 15세)는 어머니께서 수감되신 2020년 6월부터 1년 이상 혼자 생활하고 있다. 지인이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 했으나 3~4일이 지난 뒤에 수감 사실을 알려주셨다. 태어날 때부터 혼외자로 아버지와 생활한 적이 없으며 아버지를 ‘지인’이라고 부른다. 어머니 수감 후 아버지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지만 무척 낯설고 어색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일로 분주했었기에 어머니와 함께 한 어떤 추억도 떠오르지 않는다. 어머니가 누구에게도 수감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해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담임교사로부터 표정이 어두워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수감 사실을 얘기했고 학교에서 급식카드와 소정의 지원금을 받았다. 텅빈 듯한 집에서 혼자 있어 잘 먹지 않게 된다. 가전제품(세탁기, 드라이기)이 고장 나더라도 돈이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있다.

2. 사례 간 분석 결과: 부모의 부재로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됨

사례 간 분석을 통하여 각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공통적인 현상이나 반복적인 패턴을 찾고 사례 간 관통하는 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부모의 수감 이후에 홀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중심으로 범주화하며 사례의 경험을 통합하는 대주제로 ‘부모의 부재로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됨’이 도출되었다. 최종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사례 간 분석 결과

대주제	범주	개념
부모의 부재로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됨	부모의 역할을 홀로 해내야 하는 어려움	가사 및 식사 준비의 어려움
		동생 돌봄에 대한 부담과 걱정
		자립에 대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높은 주거비 부담
		생계비 부족으로 배고픔에 익숙해짐
	행동변화와 신체적 어려움	체중 감소 및 체력 저하
	심리정서적 어려움	부모수감으로 인한 충격과 지속되는 스트레스
		학대 피해와 안전 위협
	면회의 어려움	부모나 주변인이 원치 않음
		면회 정보, 거리, 시간, 절차적 어려움
	제도적 지원의 불충분과 부재	공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부족함
		가족관계와 사적 지원의 단절
공적 지원 없음으로 인한 고통		

1) 부모의 역할을 홀로 해내야 하는 어려움

(1) 가사 및 식사 준비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수감 후 모든 것을 보호자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물론 수감 이전에도 부모의 생업으로 집을 비우거나 따로 지내온 자녀도 있었으나, 이들에게 부모의 수감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못지 않게 부모의 부재로 인해 집안 일을 감당하기는 더 힘들었고, 스스로를 돌보고 제반 가사관리를 다 해내야 하는 데 따른 부담감이 컸다.

“저는 아직 분리수거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쓰레기 버리는 방법도 잘 모르고, 청소도 잘 못하는 데 이제 갑자기 그런 걸 제가 혼자 해야 했을 때, 그런 사소한 것들이 많이 힘들었죠.” (사례9)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가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전무했던 해인이는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애를 먹었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집안 일과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물어볼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다.

갑자기 [부모님이] 사라지시니까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어머니께서 빨래 해 놓으신 거 ‘널어봐라’ 이럴 때 그냥 널어놓고 했었는데, 이제는 빨래도 돌려야 되고 하니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편지에다 써서 물어보고...”(사례8)

예외적으로 수연이는 부모의 잦은 부재상황으로 인해 집안일이나 요리 경험이 있었기에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나이와 무관하게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가사 및 식사 준비 관련 경험이 거의 없어 애를 먹었다.

“아침은 거의 안 먹고요. 점심도 귀찮을 때는 안 먹어요. 저녁은 또, 그렇게 잘 챙겨 먹지는 않네요. 밥을 맨날 해 먹기가 힘들어요... 집안 일 같은 거가 되게 힘들었죠. 빨래, 설거지가 가장 [힘들었어요]” (사례6)

가정방문 시, 지안이 집의 밥통이나 가스레인지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 사용한지 오래 된 것으로 보였다. 지안이는 학교 급식(월-금)이나 도시락(주말)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대로 식사를 차려 먹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밥통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도시락 오는 메뉴에 따라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거나... 평소에는 그냥 목요일까지는 석식을 학교에서 다 주니까 먹고... 시에서 주말마다 도시락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토요일, 일요일은 그걸로 저녁을 때우고...” (사례2)

(2) 동생 돌봄에 대한 부담과 걱정

동생이나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를 대신하여 동생의 생활관리를 비롯한 돌봄제공자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었다. 대진이는 동생의 귀가 시간과 용돈 관리, 집 정리 등 부모 역할을 하는 데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또한 해인이는 동생(들)에게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알려야 할 지, 수감 사실을 알릴 경우 동생이 받을 충격, 일상생활과 관련된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둘째 동생] 애는 아직 모르니까, 좀 충격이 크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알리자 싶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고.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애들은 어떨까 싶은 거죠. 그리고 비뚤어질 수도 있고.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육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애들 훈육하고, 교육하고 그런 거 제가 잘 못하면 애네가 나빠지는 거잖아요. 내 영향이 어떻게 펼쳐질까?” (사례8)

(3) 자립에 대한 불안

연구참여자들은 혼자가 된 현실 속에서 부모가 더 이상 자신을 돌봐 줄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자립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다수의 참여자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데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내비쳤다.

“제가 어쨌든 지금 혼자 살아야 되니까 저 혼자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자립은 해야 되니까 ‘혼자 뭐하고 살아야 될까?’ 생각도 들고” (사례9)

2) 경제적 어려움

(1) 높은 주거비 부담

수용자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 수감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체감했고, 주 생계부양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 고정지출이 나가는 데 따른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다수가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은 집에서 생활하기에,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들의 월세와 관리비는 월 평균 45만원 이상, 최대 72만원에 이른다. 공적 급여를 받더라도 수급비를 거의 월세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며, 실제 생필품을 사거나 식비 내지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5만원 남짓이거나 많아도 20만원 정도였다. 매달 주거비, 공과금,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학원을 중단하는 자녀들이 다수 있었다.

“월세를 내면서 거의 다 써가지고, 지금 다음 돈 들어오는 날까지 버티는 중이에요...한 달에 제 수중에 10만 원만 있어도...”(사례2)

(2) 생계비 부족으로 배고픔에 익숙해짐

부모 수감 이후 생계비 부족과 식사 준비의 어려움 등으로 수용자 자녀들은 식사를 제때 챙겨서 먹지 않거나 거르는 빈도가 높았다. 적은 금액이나마 수중에 돈이 생기면,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반찬 지원이라도 있으면 챙겨 먹는 정도였다. 선이를 포함하여 대부분 생계비 부족으로 ‘배고픔’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냥, 계속 배고프다 보니까 배고픈 느낌이 익숙해져갔고...” (사례6)

3) 행동변화와 신체적 어려움

(1) 체중 감소 및 체력 저하

부모수감 이후 수용자 자녀들은 신체·심리·사회적 변화를 체감했으며, 이들의 변화는 학교 교사나 친한 친구 등 주변인을 통해 먼저 감지되기도 했다.

“주위에서 “너 요즘 힘드냐? 우울해? 잠을 못 자?”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좀 많이 옆드려 있었나 봐요.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힘든 일 있어?” 물으시는 거예요. ‘심각하구나!’ 혼자 자각해가지고...” (사례8)

끼니를 잘 챙겨먹지 못하게 된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점차 체중이 줄어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체력 저하를 체감했다. 한 예로 승주는 아무에게도 부모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고, 밥과 김치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다. 영양있게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식사를 거르는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이들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원래 딱히 집안일도 많이 안 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집에 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됐고, 몸도 안 좋아진 것 같고... (사례4)

[살이] 더 빠진 것 같아요. 먹질 않으니깐. 제가 원래 시력이 좋았었던 말이에요. 학교에서 자리를 바꿨는데 약간 뒷자리가 걸린 거예요 ‘저게 뭐 글씨지?’ 이러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사례8)

4) 심리·정서적 어려움

(1) 부모수감으로 인한 충격과 지속되는 스트레스

부모의 수감 직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연구참여자들이 다수 있었다. 아버지 수감 후 “사는 것 자체가 달라졌어요”라고 말하며 선이는 울음을 터트렸고,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싶었던 심정을 토로했다. 대진이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설 때마다 학교에 잘 다녀왔는지 물어봐 주던 어머니가 안계시고, ‘텅 비어있는 집’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일상생활을 공유했던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부모의 부재는 더욱 크게 체감되었다. 이들이 경험한 홀로됨과 기댈 곳 없다는 현실,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어려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져왔고, 스트레스는 학교생활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한 참여자는 게임에 과몰입하게 되어 생활관리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처음에 그냥 그렇다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밤에 컴퓨터 게임하고 그러다보니 생활패턴이 엄청 꼬여서, 학교에 가면 자고 그랬어요.” (사례8)

(2) 학대 피해와 안전 위협

부모의 수감 이후에 같이 생활하던 지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수연이는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고, 자신은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동생이 그 집에 살고 있어 염려하고 있었다.

“그 집에 있을 때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긴 해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이걸[트라우마] 고쳐야 사회 생활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사례1)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채무 문제로 사람들이 집이나 학교를 찾아와 협박하는 등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학교 앞에 누가 엄마를 찾아가지고...빨리 안 내려오면 계속 그렇게 니 삶 힘들어질 거라고. [어머니] 수감되고 난 이후에도 집에 모르는 사람이 지하주차장이나 한 번씩 와서 벨 누르고 간 적도 있고.”(사례5)

“[채무] 한숨밖에... 부담감... 저희 찾아오는 분도 계시니까...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다른 일로 어머니를 고소 같은 것을 하려고 하시니까.”(사례3)

5) 면회의 어려움 : 정보, 비용, 시간적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의 부모 면회 횟수와 접견 경험에 차이가 컸으며(최소 1회에서 최대 10회), 대부분 직접 면회보다 서신, 인터넷, 스마트 접견을 통해 부모와 소통하고 있었다. 수연이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서신이 오더라도 학교 수업 중 서신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모와의 면회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부모가 면회를 원하지 않아서, 자신은 면회를 원하지만 누나가 만류해서, 면회 정보와 기회 부족, 이외에도 면회 시간, 거리, 비용 부담, 절차상의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었다. 스마트접견조차 교도소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하러 갈 수 있는 시간이 맞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OO에 계셨을 때는 몇 번 뵈러 갔었는데,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가기가 힘들어졌죠. 제가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시간도 그렇고, 금액 부분도 그렇고. 지금 또 △△에 계시니까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스마트접견]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려면 가까운 구치소나 교도소 가서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OO 나가야 되는 데 길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6) 제도적 지원의 불충분과 부재

(1) 공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부족함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부모 수감 전부터 공적 지원의 대상이었던 경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공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 경우 공적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수급신청을 할 수 있었다. 대진의 경우 교사가 부모 수감 사실을 인지하게 된 후 학교에서 상담, 장학금 연계, 공적 지원제도 연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공적 지원이 있더라도 주거비를 포함한 고정지출로 인한 지출 후 수용자 자녀들에게 수중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선생님이 ‘이런 게 있으니까 긴급재난, 기초생활수급자되면 그거 말해라,’ 서류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사례3)

“생활비는 저번에 긴급지원 신청해서 받고 있고,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서 그거로 생활비랑 월세랑...” (사례2)

(2) 가족관계와 사적 지원의 단절

부모의 수감 이후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례는 드물었다. 선이는 아버지의 수감 직후 아버지의 친구들로부터 잠시 지원을 받았을 뿐이다.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수감 전부터 친인척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진술했다. 고모, 이모, 삼촌 등 친인척이 있어도 수용자 부모에 대해 진절머리 난다며 연락을 두절하거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모의 수감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공식적 자원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해인이의 경우 이모와 삼촌이 있으나 지원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다.

“[외삼촌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엄마랑 통화를 안 하세요...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떨어져 지내 가지고.” (사례3)

“이모 한 분 계세요. 엄마의 동생... 3월에 이사 왔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모도 형편 안 좋으셔서...” (사례 4)

“[이혼한] 엄마, [따로 사는] 언니. 원래 가족. 그리고 고모들도 사정상 알고는 계시는데, 외가는 없고, 친가는 다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사례 9)

(3) 공적 지원 없음으로 인한 고통

연구 참여자들 중 어떤 공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승주는 누구에게도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알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승주는 공적 지원 정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진주는 혼외 자녀이기에 아버지와 거의 교류가 없었으며, 어머니께서는 누구에게도 수감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기에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해인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사에게 어머니 수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으나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어떠한 공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수용자 자녀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고통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절대 말 못 해요. 절대로요. 제가 전교 회장인데, 엄마한테 연락 안 가게 해 달라, 저한테 다 오게 해 달라고… (사례 4)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수감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수용자 자녀들의 생활과 어려움을 탐색하기 위해 수용자 자녀와의 심층면담을 기반으로 사례 별,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부모 수용 이후 홀로 생활하는 수용자 자녀들의 경험은 ‘부모의 부재로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됨’이라는 주제로 도출되었다. 부모의 수감 이후 자녀들에게 가장 크게 체감된 어려움은 부모의 빈자리였고, 아직은 부모의 보호와 보살핌 속에서 성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갑작스러운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빈자리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수감 후 홀로 살아가는 수용자 자녀들을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가사와 식사 준비는 물론 동생 돌봄에 대한 부담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둘째, 생계부양자의 부재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체감했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한 후 생계비 부족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해결하기조차 어려웠다. 셋째, 결과적으로 배고픔에 익숙해지고 영양상태가 나빠져 체중 감소 및 체력 저하, 의욕 상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넷째,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 수감으로 인한 충격과 트라우마 속에서 부모의 부재로

인해 집이나 학교로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분들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시간적·경제적·절차적 어려움으로 수용자 자녀들에게는 부모와의 연락이나 면회조차 쉽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공적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식사를 포함한 생계비로 사용할 돈이 없을 정도로 부족했으며, 공적 지원에 대한 정보조차 알지 못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있었다. 성인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수용자 자녀들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부모 접견권 등의 모든 영역에서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수용자 자녀 관점에서의 실천적·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단독세대로 생활하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수감 후 미성년 수용자 자녀들은 생존권, 발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부모 수용 이전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부모 수용으로 인한 위기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예외적으로 양부모가정 사례가 있었으나 부모 모두 수감되어 실제 생계부양자 및 양육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동생이 있는 경우, 자기돌봄과 동생 돌봄이라는 이중적 돌봄 부담 속에서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나 지역사회로부터의 보호나 지원은 미흡했다. 공적 지원을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높은 월세, 식사 준비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굶기’가 일상화되어 있었으며, 공적 지원 정보조차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수용자 자녀 지원에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과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신연희, 2019; 이지선 외, 2022a), 수용자 자녀들에게는 사적 안전망도 공적 안전망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배경은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으나 부모의 수감 후 홀로 남겨진 자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지역사회에도 드러나지 않는 데 대한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집행 단계에서부터 미성년자녀에 대한 인지와 보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아동보호체계 내 이들에 대한 정보공유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경찰과 복지행정이 초기 발견과 개입에서부터 연계까지 제공하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김주미, 허미화, 2019). 교정기관에서는 신규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일 경우, 자녀들에 대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 수용자 자녀가 생활하는 지역의 아동 보호체계에서는 부모 수용 이후 자녀들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실행이 가능하도록 민관협력이 요구된다.

둘째, 수용자 자녀가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 수용 직후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신체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생활 유지의 어려움, 부모 면접의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수용자 자녀들이 부모의 수감으로 인한 충격과 양육자의 부재 속에서 또래들이 경험해보지 않는 다양한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학업 중단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경옥, 이경림, 2019; 이지선 외, 2022a). 이와 같은 이유로 부모 수감으로 인해 수용자 자녀가 처한 특수한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민감성있게 이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용자 자녀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가사 및 식사 준비와 관련된 어려움 속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배고픔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부모 수감으로 인한 가사관리, 식사 및 영양관리를 포함하여, 심리정서적 지원, 입시 및 진로 관련 스트레스, 안전 이슈 등 수용자 자녀가 처한 위기에 대한 이해 및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수용자 자녀가 처한 특수하고 복합적인 위기와 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수용자 자녀 지원 매뉴얼 개발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용자 자녀의 기본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아동·청소년기의 주거는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며(김지연 외, 2020), 수용자 자녀들의 주거는 이들의 안전과 보호 차원에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최근 김지연 외(2020)의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정밖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과 자립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문제로 인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제시된 바와 수용자 자녀들은 주거취약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수용자 자녀들은 주요 생계 부양자의 수감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경험하는 동시에 과도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었다. 주거비 문제는 부모의 수용 직후부터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자 기본권, 특히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이 주거약자이면서 주거 관련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라는 점에서 수용자 자녀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용자 자녀의 부모 접견권이 보장되도록 경제적·절차적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부모 접견을 희망하더라도 주거지에서 멀리 위치한 교정시설, 면회 시간의 제한, 비용에 대한 부담 등 제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부모 면접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심지어 면회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화상접견조차 하지 못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부모 접견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이지선 외, 2022b), 수용자 자녀의 부모 면접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 시간 연장, 자녀 거주지와 가까운 교정시설 배정, 다양한 접견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접견 예약에 대한 우선권 부여 및 절차의 간소화 등이 제도화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정행정 차원에서 수용자 자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모 면접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수용자 자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실행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공적 지원제도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 인지 정도에 있어 차이가 매우 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용자 자녀들에게 필요한 정보 접근권적 차원에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이용권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중 박선영 외(2019)의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거와 통합적 지원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개정된 형집행법 53조에 신규 수용자의 자녀를 위한 보호조치, 관련 정보 제공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2020년 발표한 수용자 자녀의 인권보호방안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수용자 자녀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데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수용자 자녀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야 하며, 사회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용자 자녀의 권리보장을 위한 UN으로부터의 권고 이후 실제 수용자 자녀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동안 정확한 수용자 자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우리사회에서 부모 수용으로 홀로 남겨진 자녀들에 대한 사례연구는 교정행정, 아동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앞으로 부모의 수감 후에 아동단독세대로 생활하는 미성년 수용자 자녀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 아동단독세대 청소년들이 발생한다면, 이들의 권리에 기반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는데 본 연구결과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속히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 보호체계 및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취약성 및 부모의 수용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우려로 가족특성과 수용 전후의 위기도 변화 등 사례별 특성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없었다는 현실적 한계를 가진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모 수용 이후 수용자 자녀의 가족유형 및 특성별 사례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17).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 5. 30.) 인권위,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필요...제도개선 등 권고.
- 강경래 (2013). 미국의 위기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수용자의 자녀, 장애소년, 보호시설수용소년 등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1, 1-35.
- 강경래 (2023). 부모의 교정시설수용과 아동의 권리보호. **한국범죄정보연구**, 9(1), 1-30. doi:10.33563/KSCIA.2023.9.1.1
- 김주미, 허미화 (2019).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지연, 김승경, 임세희, 최은영 (2020).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권수진, 신연희 (2019).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선영. (2013). 범죄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수용자 자녀지원과 경찰의 역할, **자치경찰 연구**, 6(1), 117-138.
- 박선영, 양현규, 장선숙 (2019). 외국의 수용자 자녀지원: 미국, 영국, 캐나다. **제30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추계공동학술대회**, 49-83.
- 박선영, 신연희 (2012).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 보도자료 (2018. 12. 12.) 수용자 자녀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 법무부 보도자료 (2020. 6. 26.)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발족-'아동 인권보호' 법무부가 앞장 서겠습니다.
- 법무부 보도자료 (2021. 5. 11.)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법무부가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 (2021). **가정위탁국내입양현황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 1631호, 2023. 6. 28.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2024). 2024 아동분야 사업안내.
- 신연희 (2013). 미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정책의 내용분석: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의 적용. **교정담론**, 7(2), 225-256.
- 신연희 (2016). 부모 수용 후 자녀들의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10(1), 129-158.
- 신연희 (2019). 수용자 자녀들의 상황과 관련 제도의 과제: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3(3), 261-296.

- 신연희, 강정은, 박선영, 여연심, 이경림, 최경옥 (2017).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지선, 최려나, 한기명 (2022a). 수용자 자녀의 부모수감 이후 삶의 변화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71(1), 1-31. doi:10.24300/jkscw.2022.03.71.1.1
- 이지선, 최려나, 한기명. (2022b). 수용자 자녀의 접견 경험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3(1), 27-50. doi:10.14816/sky.2022.33.1.27
- 최경옥 (2017). 수용자자녀의 양육실태 및 성장환경과 개선방안: 미성년자녀 양육자 조사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11(3), 181-214.
- 최경옥, 이경림 (2018). 부모 수감 후 남겨진 자녀의 삶의 적응과정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2, 171-206.
- 최경옥, 이경림 (2019). 수용자 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0(3), 23-53.
- 통계청 (2022). **소년소녀가정세대 현황: 발생유형별[데이터파일]**
- 하우봉 (2020). 음악치료가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7년 출판)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ition). New York: SAGE.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3rd ed.). SAGE.
- Patton, M. Q. (1999).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SAGE.
- Stake, R. E. (2000). **질적 사례 연구**(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역.). 서울: 창지사. (원저 1995년 출판)
- Stake, R. E. (2006). **Multiple case study analysi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Yin, R. K.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th ed.). CA: SAGE.
- Yin, R. K. (2015).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Guilford publications.
- United Nations (2019).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KOR/CO/5-6*

ABSTRACT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youth living alone after parental incarceration

Bae, Youngmi* · Lee, Jisun** · Heo, E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ircumstances and life experiences of young people living with minor children after their parents' incarcer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challeng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ildren of detainees, and to explore practical services and policies for them.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one-on-one or group interviews with 17 adolescents from 10 households that were child-headed households living with minor children after parental incarceration, and the collected data were conducted by means of intra-case analysis and cross-case analysis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The findings were categorized as 'difficulties in fulfilling the role of a parent alone', 'economic pressure', 'physical difficulties', 'psycho-emotional difficulties', 'difficulties in visiting', 'insufficient and absent institutional support', and the central theme that ran through their experiences was 'the absence of parents shakes the center of their liv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port recommends policies and practices to improve the child rights of detainees' children.

Key Words: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parental incarceration, household with only children

*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Seoul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